

과천도시공사 직원 학자금지원 지침

제정 2020.02.05. 지침 제9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직원 본인의 대학 및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역량 강화 및 공사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제2조(지원자격) 지원대상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직원(상근직 이상)으로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다만, 휴직중인 자는 제외
2. 국내 대학(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3.0(4.5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3. 근무성적(다면)평가에서 B등급 이상인 자

제3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업무 연관성 30%
2. 졸업후 활용 가능성 30%
3. 공사 발전 기여도 30%
4. 상위 학위 10%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지원대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임원 및 각 부장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표 별표1에 의한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학자금 지원범위는 학비의 50% 이내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기준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 2년 4학기 기준
2. 대학교 : 4년 8학기 기준
3. 대학원 : 5학기 기준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지원중단 및 환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원기간 및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경우 지원금의 100% 환수

2. 지원기간 중 학업 중도 포기(제적, 탈락)시 지원금의 50% 환수
3. 학사일정 내에 학위 미취득시 지원금의 50% 환수
4. 직전학기 성적이 3.0(4.5점 만점 기준) 이하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중단
5. 근무성적(다면)평가에서 B등급 이하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중단
6. 공사에서 제공하는 의무교육 80% 미 이수 시 다음 학기 지원중단
7. 지원기간 중 휴학한 경우 지원중단
8. 기타 공사의 지원중단 사유 발생시

제7조(의무복무) ① 학자금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의무복무기간을 갖는다.

1. 전문대학, 일반대학 : 학비지원 기간의 3배
 2. 대학원 : 학위 취득일이나 수료일로부터 7.5년
- ② 복무의무를 부과하기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사장이 인정할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학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졸업후 업무활용계획(별지 제2호서식)
3. 공사 발전기여 실적(별지 제3호서식)
4. 직전학기 성적증명서(최초입학자는 1학기성적)
5. 교육비 납입고지서(영수증)
6.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9조(학자금 지급) 학자금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의 학자금 지급은 대상자 선정 후 지원기간동안 매년 2회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학자금지원대상자 선정심사표 (제4조제2항 관련)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채점결과				근무성적
				업무 연관성 (30%)	활용 가능성 (30%)	발전 기여도 (30%)	상위 학위 (10%)	
1								
2								
3								
4								
5								
6								
7								
8								
9								
10								

1)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평가등급 표시 (S,A,B,C,D 중 택일)

-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다소미흡) D(미흡)

※ 활용가능성은 졸업 후 업무활용 가능성을, 발전기여도는 현재 공사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함

2) 배 점 : S(5점), A(4점), B(3점), C(2점), D(1점)

※ 상위학위 배점 : 대학원 10점, 대학 8점, 전문대학 6점

년 월 일

평가자 : 직 성명 (서명)

과천도시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학자금 지원신청서 (제8조제1호 관련)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최초입 용 일		현 직 급 입 용 일	
학교(학년)		전 공	
학 비	학기분 원		
추천의견			
추천자	년 월 일 팀장 (서명)		
구비서류	1. 졸업후 업무활용계획(별지 제2호서식) 2. 공사 발전기여 실적(별지 제3호서식) 3. 직전학기 성적증명서(최초입학자는 1학기성적) 4. 교육비 납입고지서(영수증)		

[별지 제2호서식]

졸업후 업무활용계획 (제8조제2호 관련)

소 속		직 급		성 명	

[별지 제3호서식]

공사 발전기여 실적 (제8조제3호 관련)

소 속		직 급		성 명	

서 약 서 (제8조제6호 관련)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과천시공사 대학(원) 학자금지원대상자로서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과천시공사의 핵심인재로서 공사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사의 본인 학자금지원지침에 규정하는 해당기간 이상 공사에 의무복무 한다.
2. 지원기간 중 다음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다.
 - 가. 지원기간 및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경우 지원금의 100% 환수 한다.
 - 나. 지원기간 중 학업 중도 포기(제적, 탈락)시 지원금의 50% 환수한다.
 - 다. 학사일정 내에 학위 미취득시 지원금의 50% 환수한다.
 - 라. 직전학기 성적이 3.0(4.5점 만점 기준) 이하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중단한다.
 - 마. 근무성적(다면)평가에서 B등급 이하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 중단한다.
 - 바. 공사에서 제공하는 의무교육 80% 미 이수 시 다음 학기 지원 중단한다.
 - 사. 지원기간 중 휴학한 경우 지원 중단한다.
 - 아. 기타 공사의 지원중단 사유 발생 시 지원 중단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성명:

①

과천시공사사장 귀하